

202.38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 29-a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후속 지시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호를 비롯해 행정명령 202.14호까지 포함하는 기타 후속 행정명령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모든 법과 기타 지시의 중지 및 개정을 2020년 7월 6일 월요일까지 행정명령 202.27호 및 202.28호에 포함되어 지속되는 바대로 연장합니다.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6일 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s and Prevention) 및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에 따라, 상업 건물 소유자, 소매점 소유자 및 건물 및 사업체 내의 공공장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총칭하여 "운영자")는 입장을 허용하기 전에 개인에게 체온 점검을 요구할 재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i) 그러한 체온 점검을 거부하는 개인 및 (ii) 뉴욕주 보건부 지침에 명시된 온도보다 체온이 높은 개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자는 단지 이 지침의 집행으로 인해 평온함 향유의 약정(covenant of quiet enjoyment) 위반 또는 이행 불능(frustration of purpose)에 대한 클레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및 뉴욕주 또는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행정명령 202.3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전에 확장되어 모든 레스토랑이나 바가 고객에서 구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서빙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로써 레스토랑 또는 바가 야외 공간에서만 고객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서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수정되며, 이러한 레스토랑이나 바가 발표된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는 한에 해당합니다.
- 행정명령 202.33호의 지침을 연장한 행정명령 202.35호는 이로써 예매 장소가 해당 장소의 실내 수용량의 25% 이내로 비필수 모임을 허용하도록 수정되며, 이는 재개 2단계의 지리적 지역 내에 위치하며 보건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 및 청소와 소독 절차를 준수하는 한에 해당합니다.

- 레스토랑 및 바의 허가된 구내에서 음식과 음료의 구내 야외 서비스를 재개하면,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사항을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레스토랑 또는 바는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이 주류 판매를 허가한 구내를 확장하도록 허가하여 (a) 인접한 공공 공간(예: 보도 또는 통제된 거리) 및/또는 (b) 그러한 레스토랑이나 바의 통제하에 달리 허가되지 않은 인접한 개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관리청의 청장이 설정한 합리적인 제한 및 절차를 적용하는 조건이며, (a) 공공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승인을 적용하는 조건이며, 보건부가 발표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입니다.

2020년 6월 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